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얀마 주민 토지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망 윈 나잉의 소송수계인 더 에이 라(Daw Aye La) 외 19명 vs ㈜포스코인터내셔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황영민

1. 소송 배경

-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이하 '포스코인터내셔널' 이라 함)은 2000. 8.경 MOGE(미얀마 국영석유가스기업)와 벵갈만의 슈에(Shwe) 지역의 가스를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6.경 CNPC(중국 국영석유회사)와 슈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전량을 CNPC에 송출해 팔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함.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CNPC에 천연가스 송출을 위해서는 육상가스터미널 부지 등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미얀마 짝퓨 지역 거주민들의 토지사용권을 매수해야 했음. 이 과정에서 포스코인터 내셔널이 짝퓨 지역 주민들에게 토지사용권 매수에 대한 보상대가, 사용기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적은 금액을 보상하고 주민들의 토지사용권을 매수하였고, 주민들은 퇴역군 인들로 구성된 마을평화위원회의 위압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토지사용권을 매도하게 되었 음.1)
- 윈나잉 외 17명의 미얀마 주민들의 경우에도, 2010. 3.경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토지사용권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위 계약 체결에 앞서 △ 주민들이 사용권매매계약으로 토지사용권을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는 점, △ 매매대금의 산출 근거 등 계약 내용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고,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퇴역군인들로 이루어진 마을평화위원회가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가 없이 토지사용권을 박탈하겠다고 하여 서명을 하게되었음.

¹⁾ 이에 관해서는 국가인권회의 연구용역으로 공익법센터 어필 등이 2013. 8.경 미얀마 짝퓨 지역 등에서 가스개 발사업 관련된 인권침해 문제를 직접 조사하였고, 그 내용은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 령제도 개선방안 연구(2013. 10.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로 발간되기도 하였음.

2. 청구 개요

- 윈나잉 외 17명의 주민들(이하 "원고들"이라 함)은 미얀마계약법에 따라 △ 계약불성립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또는 가액배상, △ '강요' 또는 '부당한 위압' 또는 '사기'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원인으로, 2016. 3. 18.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²)

3. 소송 진행 경과

- 201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제기
- 2016. 4.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답변서 제출에 앞서, 법원에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
 - 2017. 3. 1년여 간 민사소송법에 따른 담보제공의 필요성 등에 대한 다툼이 진행된 후, 원고들이 국제인권단체 등 외부 펀딩을 통해 약 2,500만 원을 마련하여 소송비용 공탁(3심까지의 소송비용)
- 2017. 5. 포스코인터내셔널 답변서 제출, 본안 전 항변으로, △ 원고들의 불특정(생년월일, 주소 등), △ 소송대리권 부존재(소송대리인에 대한 적법한 위임이 증명 안됨), △ 국제 재판관할권 부존재 등을 주장.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소송 위임 사실이 기재된 원고들의 확인서, 해당 확인서에 원고들이 서명하는 동영상 등을 제출하였으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영사 인증을 받은 소송위임장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 2019. 2. 원고들이 짝퓨지역에서 양곤의 한국대사관까지 이동하여 영사인증 소송위임장 작성 후 법원 제출(원고 3인. 나머지 원고 중 2인은 2020. 2. 제출)³⁾
- 2019. 6. 포스코인터내셔널, 영사인증 위임장 제출 원고들에 대한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 등 일 부 자료 제출
- 2019. 6. ~ 2020. 10. 본안과 관련해, 포스코인터내셜의 주장(△ 토지사용권 매매계약의 당사 자가 피고가 아니라 MOGE(미얀마 국영석유회사)임, △ 매매대금은 조사를 거쳐 적 법하게 산정된 액수에 따라 지급되었음) 등과 관련해 몇 차례 공방이 진행됨.
- 2020. 10. 원고들은 토지매매계약 과정의 위법에 대해 증명하고자 원고들이 직접 한국 법정에 서 진술할 수 있도록 당사자 신문을 요청.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원고들의 진술을 재판부가 직접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는 점, 미얀마

²⁾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일부청구로서 각 1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금액을 특정하기로 하였음. 참고로, 소 제기 당시 19명의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중 윈나잉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을 수계하는 등 사정으로 원고수가 다소 변경되었음.

³⁾ 결국 소제기 후 약 3년이 경과한 2019. 2.경까지 소송의 본안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공방이 진행되지 못했음.

사법체계의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원고들의 입장을 외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그러나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었고, 2021. 2.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변경

- 2021. 5. 변론종결(18회 변론기일). 재판부가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국제재판관할권'등 피고의 본안전 항변, 즉 소송의 적법 여부에 대해 우선 검토 의사 밝힘.
- 2021. 7. 1심 소 각하 판결(국재재판관할권 부존재)
- 2021. 8. 원고들 항소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예정)

4.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얀마 주민 토지취득과정의 주요 문제점

○ 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압적인 상황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된 점

- 미얀마는 1962. 군부쿠데타가 발생하여 2015. 총선거를 통해 민간으로 권력이 이양되기까지 약 53년간 군부가 입법, 행정, 사법부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었음.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2000. 11. 미얀마 야다나 지역의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에서는, 군부가 지역 주민들을 고문, 살인, 강제노동 동원 등의 방법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하였고, 이와 같은 군부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와 이에 결탁한 세력들에 대한 공포심이 상당하였음. 한편마을에는 퇴역군인들로 이루어진 마을평화위원회가 마을 사무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였음.
- 원고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토지사용권 취득 당시,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포스코인터내셜이 토지를 가져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정부부처 관리들과 퇴역 군인들로 이루어진마을평화위원회 등 군부와 직간접인 관계를 가진 이들의 입회 하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하게 되었음.

[원고 더 킨찌의 인터뷰 中]

(에너지부? 사람들은 퇴역 군인이어서 그래서 겁이 났습니다)

[원고 윈나잉 인터뷰 中]

- A. I did not know what I sign.
- (왜 서명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 Q. why did you sign?
- (왜 서명했나요?)
- A. because they called me to sign on any paper. So I signed
- (그들이 서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Q. why?

(무엇 때문이죠?)

A. they called again and again saying "you must sign" if you didn't sign, 대우 will take your land. (계속 불러서 서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대우가 땅을 가져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고 더 킨찌의 사실확인서 中] 4)

(7) 대우 회사측 책임자 우씨뚜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사업 방해죄로 소송하고 잡혀갈 수 있다고 농부들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원고 마 쩌 따우의 사실확인서 中]

(7) 토지 보관부 책임자와 대우 회사측 직원 우민쪼뚜, 우씨뚜가가 보상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도 토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농

[계약서 날인 부분-마을평화위원회/MOGE 입회, 증인 서명]

-그림을 위한 여백-

⁴⁾ 원도 더 킨찌와 원고 마우쩌따우의 사실확인서는, 2020. 7.경 법원에 제출된 자료로, 각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한국 법정에서 진술을 희망하는 의사 및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 기재한 내용입니다. 재판 부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신문에 앞서 제출되었습니다.

TRANSFERER

Witnesses



Name: Hla Win Khin ID: 11/KAPhaNa(N)071014

Designation: Head of Household Address: Gone Chwein Village ARR E

Name:

ID:

Position:

Address: Villag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COMPANY

Name: U Si Thu

ID: 9/MaNaMa(Naing)032375

Designation: Socio-Eco Coordinator

Address: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AND.

Name: U Myint Shwe ID: OTN-063769

Position: Executive Engineer (B)

Address: Myanma Oil and Gas Enterprise

[MOGE의 2010. 3. 퇴거 요구 공문]

Date: March 16, 2010

Subject: Notice

By referencing your declaration under Clause 7 of the Agreement Bond relating to Transfer and Relincuishment of the Right to Use the Land and/or the Crops between you and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the Operator of the Shwe Offstore Pipeline Joint Venture Partners, on behalf of Myanma Oil and Gas Enterprise, you are hereby given this Notice to vacate the PLOT not later than March 21, 2010.

U Myint Shwe

Representative of the Myanma Oil and Gas Enterprise

Executive Engineer (B)

Myanma Oil and Gas Enterprise

Ministry of Energy

- 계약서의 내용 및 법적 효력 등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하게 되었고, 계약서도 제공받지 못한 점
- 원고들은 계약서 날인 당시, △ 영구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잃는다는 사실, △ 양도금액의 액수 및 산출근거⁵⁾ 등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고, 계약의 내용 및 법적 효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하게 되었음.
- 계약서에 증인으로 날인한 마을평화발전위원회 위원도 계약서의 본문을 확인하지 못한 채 증인 서명란 만을 제공받아 증인란에 서명했고, 위 마을평화발전위원회 위원도 토지를 3년간 임시 사용할 것으로 알았을 뿐 영구히 사용권을 가져가는 것인지 몰랐음.
- 또한, 원고들은 서명 후에 계약서조차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 률상담소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문제제기를 한 후 2014. 9.경에야 주민들에게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였고, 이에 일부 주민들이 매매계약서를 확인하게 되었음.

[원고 윈나잉 인터뷰 中]

Q. when you signed the paper did you know that you will be losing the land?

(그 종이에 서명을 할 당시, 땅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A. at the beginning I didn't know.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Q. before receiving the money, did you know how much you will be getting?

(돈을 받기 전, 얼마를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A. no

(아니요)

⁵⁾ 원고들이 사후에 취득하게 된 계약서에는 토지가격표와 작물 가격표가 기재되어 있으나, 어떤 근거에서 산출된 것인지 그 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설명 자료도 없었음. 소송에서 원고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구체적인 산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이 계약서에는 당신이 42000 짯의 보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종이를 본 기억이 있습니까?)

A. no

(아니요)

- Q. is this your signature?
- (이 서명은 당신 서명입니까?)

A. no

(아니요)

[원고 더 킨찌의 사실확인서 中]

- (3) 보상금을 수령하고 3년 후에 또 다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토지를 대우가 영원히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4) 미얀마 경제은행에서 돈을 찾았을 때 보상금액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우는 미리 보상금액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 (6) 어딘가에 싸인을 했었습니다. 어떤 일로 싸인을 해야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싸인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읽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읽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원고 마 쩌 따우의 사실확인서 中]

- (3) 대우는 토지를 영원히 가져가겠다고 하지 않았고, 보상금 주고 난 이후 로부터 3년이 되어서야 영원히 가져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6) 싸인을 하기 전에 계약서 내용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우측에서도 계약서 내용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증인으로 서명한 마을평화위원회 콘찌망의 인터뷰 中]

- Q. Did you (계약서를 펼쳐보인다) see this paper?
- (계약서를 펼쳐보이며) 이 서류를 본 적 있습니까?
- A. No 아니오
- Q. Did you see any of these pages?
- 이 중에서 본 적이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까?
- A. No only one paper. (서명 페이지를 가리키며) This paper.
- 아니오. (서명 페이지를 가리키며) 이 한 장만 봤습니다.
- Q. So out of all the pages I showed you, the only things you saw were villagers' signing page and your signing page.
- 그럼 제가 보여드린 서류의 모든 페이지 중에서 마을 주민과 당신이 서명한 페이지만 보셨다는 것이군요.

A. Yes. 네

- Q. Did you know how much each villagers were getting at the time you were signing this page?
- 당신이 서명할 당시 당신은 각 주민들이 얼마만큼의 보상금을 받게 될지 알고 계셨습니까?

A. No. 아니오

Q: when did the villagers find out how much they are getting?

- 주민들이 자신이 받는 보상금 총액을 알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A: After the _____ meeting, S said how much money they are getting. Another high rank officer 맨주두 also came here to see that. There were a lot of head officers in my computer

(___ 미팅 후 입니다. S 라는 사람이 주민들에게 얼만큼을 받을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또 다른 대우 측 고위 직원인 맨주두도 그 미팅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녹취 기록이 제 컴퓨터에 있습니다.)

- 토지사용권 상실의 대가로 수령한 보상금의 액수가 현저히 적어 원고들이 이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점
- 원고들이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으로는 대체농지를 마련하여 농사를 짓거나 새로운 생계수단을 모색하기 어려웠음.
- 이와 관련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망 원고 윈나잉이 수령한 보 상금은 라카인주 가구별 월 생활비의 31개월 이상에 이르는 수준이므로, 원고들이 거액의 보상 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음.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토지 사용권을 상실한 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종래 농사를 지을 때보다 훨씬 낮은 수입을 올 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활수준이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대부분이 토지에 대한 사용 권을 '영구히' 상실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약 2년 7개월의 생활비 보상으로 원고들이 이전의 삶 또는 생활수준을 회복할 수 없었음.

[원고 더 킨찌의 인터뷰 中]

Q. you said the money Daewoo gave was not enough. Can you tell me why? (대우의 보상금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A. Because we used it for our children's education, healthcare. ran out of money short time.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덧붙여: 포스코인터내셜은 소송에서 계약 당사자가 MOGE라고 하며, 원고들의 토지사용 권 매매 과정에 대한 책임을 부정함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소송 과정에서 주요한 주장으로, 원고들과의 토지사용권 매매계약의 당사자 는 미얀마 국영석유회사(MOGE)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토지사용권 매매 과정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정함
- 그러나 앞서 계약서 서명란에서 볼 수 있듯이, 양도인(TRANSFERER)란에 각 원고들의 서명이 있고, 그 밑에 바로 회사(COMPANY)란에 포스코인터내셔널 소속 대표자의 서명이 있으며, 반

면 MOGE는 마을평화발전위원회와 함께 증인으로서 서명을 하였을 뿐임. 만약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주장대로 MOGE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면 '증인'으로 서명을 할 이유가 없음.

-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토지취득활동" 자료에서도 이 사건 계약서의 "서명인"(Signatory Person)에 관해, 보상 대상자를 양도인(transferer), 토지취득의 대표(Representative of land acquisition)를 피고(대우)라고 기재하였고, MOGE 대표는 마을평화발전위원회장과 함께 증인으로 서명했음을 밝히고 있음.

[포스코인터내셔널 작성 토지취득활동 자료]

Signing Agreement Bonds



- Agreement bonds were signed by respective people at the time of awarding compensation.
- Signatory person
 - Compensatory person (Transferer)
 - Representative of land acquisition (Daewoo)
 - Chairman of Villag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Witness)
 - Representative of 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 (Witness)
- The registration of agreement bonds was completed on 5 May 2010.



[토지사용권 취득 매뉴얼 中 사용권 양수도 계약 관련]

2.3 Set up of Land Acquisition and Compensatory Principle / Procedure

The Land acquisition and crop compensation process for the Shwe Offshore Pipeline Joint Venture Partners will be managed by **Daewoo International**Corporation in its capacity as an Operator of the Shwe Offshore Pipeline Joint

Venture Partners.

[번역]

슈에 공동기업 파트너의 토지 취득과 작물 보상 과정은 **공동기업파트너들의 운영사로서 대우**가 자신의 능력으로 수행한다.

2.9 Preparation of Agreement Bonds

The Agreement Bonds, which will be printed in English and Myanmar Language, Appendix 10, will be signed by individuals on receipt of their compensatory awards. In effect the Agreement Bond is evidence of a contract between the Operator on behalf of Shwe Offshore Pipeline Joint Venture Partners and the individual and is also a receipt that payment has been received.

[번역]

2. 9. 토지 사용권 양수도 계약의 준비

토지 사용권 양수도 계약서(영어와 미얀마어로 인쇄. 별첨 10)는 개인들이 보상금을 받는 즉시 서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해당 토지사용권 양수도 계약서는, 사실상 슈에 공동기업파트너의 운영사(the Operator on behalf of Shwe Offshore Pipeline Joint Venture Partners)와 개인(individual, 토지권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증거이고,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영수증이라 할 것입니다.

4. SUMMARY OF COMPENSATION PROCEDURE IN LAND AND CROPS

Phase IV

1. At ceremony, Land Holders or Land Occupiers, the Operator of Shwe Offshore Pipeline Joint Venture Partners and witnesses sign both original and photocopy of Agreement Bond.

[번역]

기념행사에서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점유자, 슈에공동기업 파트너의 운영사 및 증인들**이 사용권 양수도 계약의 원본과 사본에 모두 서명을 합니다.

5. 결어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업시민'에 기반한 전향적 태도 필요
- 최근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ESG[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는 투자 가 각광받으면서 인권 친화적인 기업경영이 화두로 제기되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대외적으로 윤리경영을 표방하면서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그러나 실제로 그와 같은 지침에 따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구체적인 행동이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임).

- 그 중에서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8. 이른바 '기업시민'을 표방하며 국내 기업 중에서 선도적으로 인권친화적 기업 경영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를 알렸고, 이를 구체화하여 '인권의 보호와 존중' 항목으로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하는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필요시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사 결과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해결책을 모색한다. 인권과 관련된 활동 내용과 결과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한다.' 등 '인권의 보호와 존중'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 사건 소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위압이나 강요에 따라 토지사용 권을 잃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해 자사의 윤리지침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실사'를 통해 실상을 확인하거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도외시한 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취지로 소 각하만을 구하거나, 계약 당사자임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음.
- 이 사건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표방하는 '기업시민', 즉 인권친화적 기업 경영활동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이제라도 다국적 기업에 의해 토지사용권을 잃게 된 원고들의 고통에 진정성 있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청



기업시민

포스코, 국민기업 넘어 기업시민으로 거듭난다

2018/08/24

포스코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수익뿐만 아니라,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시민'으로 발전할 것으로 밝혔다.

여기서 의미하는 "기업시민"은 기업도 인격(人格)을 갖춘 주체가 되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공존과 공생을 자발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 미얀마의 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대한민국 법원에 권리구제를 요청하게 된 점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판단 필요
- UN 인권이사회는 2009. 미얀마 사법부에 대하여 "인권과 관련하여 개입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사법적 독립과 정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보고한 바 있음. 최근 (2020) 국제적인 시민단체(The World Justice Projec)의 조사에서도 각국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서, 미얀마 사법부는 전체 128개국 중 112번째에 랭크되는 등 미얀마의 사법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9년 발간한 'Overview of corruption and anti-corruption in Myanmar' 자료에 의하면, 미얀마의 사법부문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얀마 국민들은 대부분 공정한 사법기능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고 이에 대다수가 법원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위 자료에 의하면 심지어 판사들이 특정사건에 관하여 군부로 추정되는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받는 전화를 받고 있고, 군부에서 사법부내 군장교를 임명하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점 및 이에 따라 대체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음).
- 원고들은 미얀마의 취약한 사법시스템 하에서, 특히 군부 및 MOGE와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슈에 가스전 사업과 관련해 '미얀마 사법부'를 통해 피고의 토지 수용권 매매 절

차의 위법성을 인정받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등 권리구제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으로 인해, 민주적 사법절차를 가진 대한민국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박정희정권이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조작'했던 이른바 '구로농지 강탈'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고(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19690 사건 등), 이 사건은 미얀마에서 한국 기업과 미얀마 군부가 주민들의 농지를 강탈해간 사건과 다를 바 없음.
- 아울러, 대법원은 '증거방법'에 따른 심리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의 수집과 제출, 소송수행 등에서 지리적, 언어적 불편함" 등은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하는 사유가될 수 없다고 보고 있음. 이에 따라 설사 미얀마에서 벌어진 계약에 관해 증거 수집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오히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심리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고, 원고들도 한국 법원에서의 진술을 희망하고 있음), 대한민국에 피고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보통재판적이 존재하는 이 사건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할 수 없음. 나아가 이 사건 소는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 만약 이 사건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할 경우 향후 대한민국 법원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참고-이 사건과 유사한 CNPC의 토지사용권 매수 과정에서 확인된 계약의 하자에 관해>

- 중국국영석유회사(CNPC)는 2009~2010년의 기간 동안 미얀마-중국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 미얀마 주민들의 토지 사용권을 매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미얀마에 소재한 NGO인 Myanmar China Pipeline Watch Committee(MCPWC)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무엇보다 위 MCPWC의 보고서 기재에 따르면, CNPC는 피고가 사용한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유사한 절차에 의해 미얀마 주민들의 농지를 취득하였고, 위 보고서에 기재된 CNPC의 토지사용권 취득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포스코인터 내셔널의 토지사용권 취득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했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CNPC의 토지사용권 매수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문제점들은 △ 파이프라인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Lack of Transparency in Dealings with the Affected Population) △ 농지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Lack of Transparency in Land Measurement Process for the Right of Way), △ 토지 취득과정에서의 기망 (Dishonest Land Acquisition Process), △ 토지 및 농작물 보상 계약서의 여러 결함(Nine Weaknesses in the Land and Crop Compensation Agreements), △ 토지 및 농작물 보상 계약서 초안 작성에서의 투명성 결여와 마을 주민이 계약서를 읽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Lack of Transparency in Drafting Land and Crop Compensation Agreements and Signing without Villagers having a Chance to Read them) 등이었음.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the 968 farmers interviewed by the research team answered unanimously that the text of the land and crop compensation agreements were written by the Project, without any consultation with the farmers. Until now, none of the affected farmers in Ngaphe and Kyaukpadaung townships had a copy of the agreement at all. Some farmers in Yenanchaung, Singaing, Kyaukme and Kyauk Phyu received a copy of the agreement at different times, such as three months, six months, or even more than one year after they signed it. Only then did they realise that their farmlands were being taken away for generations.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팀이 인터뷰한 968명의 농민들은 농지 및 작물 보상계약서의 문구를 농민들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프로젝트 주체 측이 작성했다고 만장일치로 응답했다. 지금까지 Ngaphe 마을과 Kyaukpadaung 마을의 피해 농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지 않았다. Yenanchaung, Singaing, Kyaukme 및 Kyauk Phyu 마을의 일부 농민들은 제각각 다른시간에 계약서 사본을 얻을 수 있었는데, 가령 서명한 날로부터 석달, 여섯달, 혹은 1년 넘게 걸

<u>려서야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들 농민은 그제야 자신들이 이들 농지를 수 세대에 걸쳐 이용할 수</u>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93.8 per cent of the farmers have still not received a copy of the agreement. Only 5.99 per cent have their copy. Until now, 75.62 per cent of the farmers questioned believed that they still owned the farmland used for the 30-metre ROW, and just 11 per cent received a copy of the agreement and knew they had to completely relinquish their farmlands for generations. There were a few elderly farmers (e.g. Shan, Ta'ang or Palaung, Asho Chin and Rakhine) in their 70s and 80s who were not able to speak Myanmar languages, and found it hard to give a clear response to the question.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 가운데 93.8%가 아직도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하고 있다. 5.99%만이 사본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도 조사 대상 농민 가운데 75.62%는 자신들이 30m 관로권(ROW)으로 이용되는 농지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계약서 사본을 받은 불과 11%의 농민들만이 자신들이 수 세대에 걸쳐 농지를 포기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u>미얀마어를 할 줄 모르는 70</u>, 80대 노인 농민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들은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The farmers remembered that the authorities told them that only if they signed the land and crop compensation agreement, would they receive the compensation money. So they had to sign an agreement they did not get a chance to see or read. Some farmers did not even know what kind of document it was, and simply said: "I had to sign on a paper." At the time of signing the agreement, the authorities already turned down the first pages of the agreement (which contained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and opened the signature page in which the farmers had to sign under "Transferrer." The compensation money was packed with yellow envelopes or black plastic bags, and a photograph was taken when the farmer received the compensation. The farmers did not see the text of the agreement in the first few pages, and did not know that they had the right to ask for a thorough reading of the document before singing it. They also did not dare to ask for their right to read it. Some farmers did ask the officials to read the text, but it was rejected, with the excuse that time was limited. Therefore, there are lots of farmers who did not even know the title of the agreement. In Figure 6, a woman farmer from Singaing Township can be seen signing the agreement, and the first pages are already folded. The photo shows exactly the situation that the farmers described to the research team.

농민들은 당국(※ CNPC와 함께 온 정부 관계자를 의미)이 토지 및 농작물 보상 계약서에 사인해 애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점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들은(농민들은) 자신들이 보거나 읽을 기회를 얻지 못했던 계약서에 서명해야만 했다. 일부 농민들은 그 문서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조차 몰랐으며, "종이에 서명해야 했다"고만 말했다. 계약서 서명 시점에 당국은 이미 (가장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계약서의 처음 페이지들을 넘겨서 서명란이 담겨 있는 페이지를 펼쳐두었고, 농민들이 "양도자"라는 문구 아래 서명하도록 했다. 보상금은 노란색 봉투나 검은 비닐봉투안에 포장돼 있었으며, 농민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때 사진이 촬영됐다. 농민들은 처음 몇 페이지에 담긴 계약서 내용을 보지 못했고, 서명하기 전에 문서를 읽고 질문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점을 알지 못했다. 농민들은 읽을 권리를 요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일부 농민들은 관계자들

에게 문구를 읽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리하여 많은 농민들은 계약서의 제목조차 알지 못했다. 그림 6에 계약서에 서명 중인 Singaing 마을의 한 여성 농민이 나와 있는데, 처음 페이지들이 이미 접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진은 농민들이 연구진에게 묘사했던 바로 그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Also, as shown in Table 4 below, the farmers recalled the words of intimidation they received as pressure to sign the agreement.

Table 4: Intimidation experienced by affected farmers in compensation process

Intimidation Experienced by Affected Farmers in Kyauk Phyu

- "If you do not sign the agreement, we will confiscate your farmland without compensation.
- > "You must accept compensation without any complaint. If not, you will not get it."
- "If you do not sign the agreement, you will be kept in jail and the farmland will be confiscated."

또한 아래의 표 4 에는 농민들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압박을 받으며 들었다고 기억해낸 위협적 언사들을 정리해 두었다.

[표 4] 보상절차에서 피해 농민들이 경험한 위협

Kyauk Phyu 지역 피해 농민들이 경험한 위협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보상 없이 당신의 농지를 강제로 몰수할 것이다. 어떤 불평도 달지 않고 보상을 수락하라.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고 농지는 강제 몰수될 것이다.